

1993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보고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1993년 5월 24일

도시 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5월 17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3년 5월 19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
(1993년 5월 24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도시국 소관)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

나. 주요 골자

○ 남구 총괄 : 71,558백만원

[]	일반회계 : 68,104백만원
	특별회계 : 3,454백만원

○ 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액	비고
계	26,209,176	15,092,545	11,116,631	73.6%
일반회계	25,549,171	14,492,540	11,056,631	76.3%
특별회계	660,005	600,005	60,000	10%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득)

가. 도시위원회 소관인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액	비고	
합계	26,209,176	15,092,545	11,116,631	73.6%	
일반회계	25,549,171	14,492,540	11,056,631	76.3%	
주차장특별회계	660,005	600,005	60,000	10%	
일반회계 세항별내역	운수행정지도 교통안전시설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토지관리 건축지도 하수도사업 도로교량관리 도로교량건설 하천관리 재해대책 일반지역개발	343,056 28,044 1,115,143 984,163 73,530 134,214 48,642 1,488,928 17,612,767 1,989,860 1,206,824 524,000	311,817 7,200 1,040,980 735,957 79,175 74,503 45,760 1,436,929 8,287,300 1,469,260 479,659 524,000	31,239 20,844 74,163 248,206 △5,645 59,711 2,882 51,999 9,325,467 520,600 727,165 151.6%	10% 289.5% 7.1% 33.7% △7.1% 8.0% 6.3% 3.6% 112.5% 35.4% 151.6%

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있어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공무원 급여 증원조정 3%, 정보비 33%, 수용비수수료 10%, 각종수수료 10%, 홍보간행물 20%, 차량비 30%, 국외여비 30%, 출장여비 5%, 연료비 10%등을 일괄적으로 3-33%삭감하였습니다.

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증가 감소된 부분중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가드레일(5개소 200m)설치 20,000천원 증가, 남구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80,000천원 증가, 가로등 유지보수 15,000천원 증가, 보안등 수선 및 노후보안 등 교체56,000천원 증가, 가로등 설치 171,000천원 증가, 용호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8,500천원 증가, 저소득 주민 환경사업(우암6지구) 45,000천원 증가, 지장전주이설비 60,000천원 증가, 공공도로편입 사유토지보상 100,000천원 증가, 도로개설공사 (15건) 885,000천원 증가,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8,281,000천원 증가, 침수지 해소공사(10건) 520,600천원 증가, 재해예방공사(8건) 647,165천원 증가, 관내 상습침수지(8개소) 용역비 50,000천원 증가, 굴삭기(1대) 84,000천원 삭감,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4건) 306,000천원 삭감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많은 예산으로 편성된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철저한 재해예방대책, 효율적인 하천소통 관리,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통행 및 원활한 차량소통, 주민복지등을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단가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었는가, 주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인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차인규 위원	도시국장 박종대	정보비 삭감 비율이 내부부 지침에 50%로 되어 있는데 33%란 이유 는?	지침이 내려 오기전에 1/4분기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분은 50%이며 전체 대비는 33%임.
배영일 위원	예산계장 김광주		
이기광 위원	도시국장 박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부문의 일반부담금 에 대한 설명 · 교통안전 시설 관리, 주요사업의 시설비인 가드레인 설치의 필요성 은? · 건축지도, 경상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와 용호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계획 용역비에 대해 설명 · 우암철도 건널목 급수전 정비 공사 관리에 대해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서울사의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으로 우암로 110m 도로개설 전액 부담 협약 · 문현고개 - 대연동 사거리의 내리막길에 교통사고가 많아 경찰청의 요청으로 일부 구간만 우선 설치하려 함. ·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선 전체 현황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 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음. · 부산시가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종합 관리 계획을 부산시와 다시 협의하겠다.
박남서 위원	도시정비 과장 안영기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 비, 용역비인 남구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까지 장기적인 개발 계획 안을 수립하여 시행에 나가기 위해서는 용역 설계를 하여야 인구, 공원, 산업, 계획 등 전체적인 계획안이 수립이 되어 시행할 수 있는데 타구는 다하고 있으나 남구는 늦은감이 있음. · 인구 배분, 공원, 녹지, 방재 재정계획등은 설계를 하여 과업 지시서가 완성되면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음.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김봉곤 위원	도시국장 박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에서 천주교 묘지 - 동명불원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 동명전문대 - 유엔묘지 구간의 도로 확장 계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호동 주민의 대다수 전의에 의해 용호동에서 시내로 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비 보조로 시행할 것이며, 주민과의 협약된 사업임. · 현재로선 계획이 없으나 차후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38 억 정도로서 31억 정도는 시비 보조를 받을 계획임.
배영일 위원	건설과장 김병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광안2,4동 상습 침수지 해소 공사에서 도시가스, 상수도 이설하는데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년도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도시가스, 상수도 이설에 관한 것임.
차인규 위원	도시국장 박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 단체장 선거가 95년에 있다면 그때가서 남구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언기할 용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구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남구는 늦은 감이 있으며 타구보다 면적이 넓고 개발성이 많은 지역으로서, 해수욕장, 이기대 공원, 황령산도 개발하여야 하며 관광개발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도로망까지 세울 수 있는 전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최소한의 경비가 2억 정도 들어감.
이계일 위원			
송석복 위원	건축과장 김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지도, 경상사업비 용역비인 용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계획 용역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호1,2지구는 주민의 건해차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3지구는 사업 시행이 희망적이며 시행을 위한 중앙의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함.
김봉곤 위원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명수 위원	건설과장 김병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 중에 삭감이 있는 이유는? · 자원, 개발이 골고루 분배가 안되고 어떤 둘째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예산 감정 결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임. · 대연지구, 광안지구는 다소 개발이 되고 다소 균형이 잡혔으나 우암, 갑만, 문현지구는 개발이 안된 지역이 많아 각 동별로 골고루 분배가 어려우며, 주민 숙원사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실정인데 지역 안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